제2018-2회 대학평의원회
2018. 12. 19.(수)

『경남도립거창대학』
대학평의원회 심의자료

경남도립거창대학

2020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변경(안)

교육부 2020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서 간호인력 증원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대학 **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계획을 변경**하고자 함

Ⅰ 추진배경

❍ 교육부 전문대학 간호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우리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검토

❍ 간호학과는 道에서 추진하는 **우리대학 특성화 방향인 보건의료계열 확대에 부합**하고, **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최상위 학과로 우리대학 생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증원 필요**

- 간호학과 주요 지표

연도별	2016년	2017년	2018년	우리대학 평균 (2016~2018년)
입학경쟁률	9.7	13.6	10.7	4.1
충원율	103.3	101.7	101.5	84.5
취업률	90.7	94.7	87.1	66.5

-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(보건복지부)

(단위: 명)

구분	2018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30년
간호사	-122,164	-110,065	-111,988	-114,507	-117,854	-121,846	-126,371	-158,554

Ⅱ 간호학과 증원 규모 및 요건

❍ 기존 정원의 1/3범위 내(우리대학은12명 증원 가능, 65명)

❍ 증원요건

- 전임교원 확보율 : 61% 이상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(편제완성)
정원 53명(현재)	5	6(+1)	6	7(+1)	7	7
정원 65명	5	6(+1)	7(+1)	8(+1)	8	8

- 비전임교원·조교 등 인력 확충, 강의실·실습실 등 시설 확보

Ⅲ 입학정원 조정기준

❍ 간호학과(4년제) 12명 증원 시, **2년제 학과 24명 감축 필요**

-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전까지 **추가 학과개편 없이 학과별 정원만 감축**

❍ 조정기준 : **학과단위 25명 이상, 계열단위 40명 이상**

※ 학과별 전임교원 인원, 충원율·취업률 고려

Ⅳ 입학정원 조정 변경(안)

2019학년도				2020학년도(1차)				2020학년도(2차)	
구분	학 과		입학정원	학 과		입학정원	증감	입학정원	증감
계			417			417		405	△12
자연과학	간호학과		53	간호학과		53		65	12
자연과학	뷰티웰니스과		30	뷰티웰니스과		30		26	△4
자연과학	보건의료행정과		32	보건의료행정과		32		28	△4
인문사회	세무회계·유통과		30	세무회계·유통과		26	△4	25	△1
인문사회	아동보육복지과		32	아동보육복지과		32		28	△4
공학	건축·인테리어계열	건축인테리어전공	50	건축·인테리어계열	건축인테리어전공	50		50	-
공학		건축전공			건축전공				
공학	드론토목계열	드론측량전공	42	드론토목계열	드론측량전공	42		40	△2
공학		드론토목전공			드론토목전공				
공학	자동차기계과		32	자동차기계과		32		28	△4
공학	항공기계IT계열	항공제작정비전공	64	**항공정비계열**	**항공정비전공**	**42**		40	△2
공학		항공전자전공			**항공전자정비전공**				
공학		컴퓨터ICT전공		**컴퓨터공학과**		**26**	**4**	25	△1
공학	소방·전기계열	소방방재전공	52	소방·전기계열	소방방재전공	52		50	△2
공학		전기전공			전기전공				
4계열 6개과				**4계열 7개과**				**4계열 7개과**	

Ⅴ 행정사항

❍ 간호학관 신축 : 2020년 당초예산 40억 확보

❍ 간호학과 전임교원, 행정·실습 조교 연차별 충원

❍ 간호교육인증평가 지표와 관련된 예산 적극 반영

❍ 간호학과 교수 증원에 따라 타학과 교수정원 추가 확보 검토

붙임 **관계규정**

❑ 학칙 제72조(대학평의원회)

제71조(대학평의원회) ①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(이하 "대학평의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5. **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**

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총장, 교무부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(定數)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**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**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 대학평의원회는 회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대학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